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검 토 보 고

1. 제안사유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2002년도에 종료됨에 따라,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2003~2006년)을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 핵심사업 (성인암관리사업, 방문보건 뇌혈관질환예방 및 관리사업) 추진
- 직원의 전문교육 강화
- 노인·의료·복지의 연계를 통한 포괄적 서비스 제공

나. 지역현황과 전망

- 지역사회 진단 실시 : 각종 기초 통계자료 수집분석, 설문조사 실시
 - ▷ 지역사회진단 결과 분석에 따른 추후전망
 - : 보건의료수요측면, 공급측면

다. 보건소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

- 핵심사업 : 성인암관리사업, 방문보건 뇌혈관질환예방 및 관리사업
- 일반사업:
 -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 : 영유아보건사업, 학생보건사업, 모성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

- 서비스별 보건사업 :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사업, 영양개선사업,
구강보건사업, 만성전염병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만성퇴행성질환관리사업

라.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 진료위주의 의료기관체계를 예방위주의 체계로 정비
- 전문인력 확보
- 보건의료장비 보강

마. 지역내 공공기관 및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 공공기관과의 추진계획
 - 고신대학과 노인건강관리 지침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족보건복지협회, 사회복지관과 암검진 협조
 - 대한결핵협회와 연계하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이동검진 실시
 - 민간의료기관과의 추진계획
 - 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영양사회등의 보건사업 참여유도
 - 무료선청성대사이상검사, 정신질환자관리, 결핵환자관리등
- 전문 민간의료기관과 연계치료 : 동산병원등 12개병원

3.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제3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4. 검토의견

이번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구민보건향상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오는 12월말에 종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써 그 내용을 검토한바 관련법 규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였으므로 계획안과 같이 통과시켜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002. 10.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삼립